

## 5. 建設業法 施行令中 改正(案) 立法豫告

資料提供：建設部

- 건설부는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급한도액 제도개선 및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의 강화와 함께 최근 심화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부족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기준의 조정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업법 시행령중 개정(안)을 '92. 10. 8 입법예고하였다.
- 건설부는 이번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은 내년도에 건설업 면허체계개편등을 위한 건설업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우선 시급한 사항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.
- 건설업법시행령 개정(안)의 주요골자는 붙임과 같다.

덧붙임 : 건설업법시행령 개정(안) 주요골자

###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(안) 주요골자

- 현재 건설공사의 입찰시 각 건설업 면허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는 토목공사실적과 건축공사의 실적의 구분없이 도급한도액을 산정하고 있어 건축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가 대규모 토목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(토목과 건축으로 구분) 도급한도액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건설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함.
- 도급한도액 산정시 개인 건설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도급한도액 기준금으로 하고 있어 법인보다 쉽게 자산을 증감시킬 수 있는 점 때문에 능력에 비하여 도급한도액을 높게 책정 받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인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 기준금을 자산평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면허기준에서 법인과차등을 둔 취지와 같게 함

- 그간의 건설공사의 비용상승과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기술사 부족난으로 인한 이중취업 및 기술자 스카우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

현행	개정안
○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: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자격취득후 해당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('92. 12. 31까지 한시적용)	○공사금액 20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: 기술사 ○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: 기술사 또는 기사1급 자격취득후 해당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

-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업체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2배로 상향조정

위반행위	과징금의 금액	
	현행	개정안
○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	1,000만원	2,000만원
○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 의무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3회이상 하자가 발생한 때	1,500만원	3,000만원
○최근 1년간의 건설공사 실적의 년평균금액이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	2,000만원	4,000만원
○고의·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때	2,000만원	4,000만원
○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의 영업정지의 요구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는 때	1,500만원	3,000만원

- 합병 또는 양도양수등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중복 소지하게 된자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면허를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면허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
- 건설업자의 신고사항중 자본금변경에 대해서는 매년 도급한도액 산정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또는 건설업자 실태조사부 정리시등에 수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자본금 변경신고 의무는 폐지함
- 건설업 면허기준중 개인건설업자의 경우에도 경영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배인 등기를 하도록 함